

방송의 자유와 책임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보장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도 포함되고, 방송의 자유를 구체화한 방송편성의 자유는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는 데에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참조].

이에 관하여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05조 제1호에서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을 포함한 언론의 책임에 관하여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관하여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 제6조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32조 등에 의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방송 등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에 관하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

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의 배상’ 등 침해에 관한 구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취재 과정의 범법행위 허용 안 돼

한편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사생활침해행위금지등) 참조]

대법원에서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 합의체 판결(통신비밀보호법위반) 참조]. 취재의 자유는 방송 등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방송 관계자가 저지른 취재 과정의 범법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왜곡 보도 및 사생활의 침해에 대한 시정 요구 무방

방송광고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되는 사적 재화이지만, 방송광고를 거래하는 매개 수단인 방송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로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그 거래를 중간에서 제3자가 중개하도록 하는 미디어랩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방송사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반대로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공영미디어랩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만을 통해 방송광고 판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미디어랩 경쟁 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방송의 상업화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영방송사에 대한 광고주나 특정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여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한다[헌법재판소 2013. 9. 26. 2012헌마 271 결정 참조].

이와 같은 방송편성의 자유에 관한 입법이나 현행 미디어랩 제도하에서 광고주나 광고주협회 등이 방송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내용 등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방송의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 공익성을 위한 제도이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부 방송프로그램의 반기업·반시장적 표현이나 왜곡 보도 및 사생활의 침해 등 취재행태 등에 대하여는 해당기업인 광고주나 광고주들의 권익보호단체인 광고주협회의 입장에서 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

하지 않고 공정성과 공익성에 반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그 시정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의견을 방송사에 전달하거나 외부에 표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허위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와 책임 추궁해야

대법원은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관하여 일부는 허위사실이지만, 국민의 먹을거리와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형성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 사안이고,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정되는 방송보도 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방송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법원의 추세와 함께, 앞서 본 ‘사생활침해행위금지등,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례 등 이외에도 최근 유명연예인들이 악성댓글과 협박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방송 프로그램의 취재 및 보도에서 대상으로 지목됨으로써 그 사생활을 침해받은 직접 피해자로서는 그 방송의 허위·왜곡 보도 내용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헌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방송사 및 방송관계자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정치·이념 등 특정 목적으로 가지고 방송의 자유를 남용하는 자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대처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KAA**

